

1. 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9조 및 별표1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52조2제1항제3

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제9조 관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 같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 등의 관리 및 같은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에 관한 업무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선정·지원에 관한 업무
5.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업무
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에 관한 업무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 판매 신고,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농업기계 폐기 신고 및 같은 법 제9조의5,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업무
8. 「비료관리법」 제7조에 따른 비료의 공급,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비료의 관리·신고에 관한 업무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가축분뇨 광역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처리에 관한 업무
10. 「사료관리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자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13.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 관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 및 출하 신고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u> <u>구축·운영 등) 법 제52조2제1</u> <u>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u> <u>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u> <u>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u> <u>는 별표 1과 같다.</u>